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3

발의연월일: 2021. 4. 12.

발 의 자:권인숙・박찬대・윤미향

윤영덕 • 이탄희 • 주철현

서동용 • 유기홍 • 강민정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학교폭력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가능하게됨에 따라 성적 정보 요구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음란·폭력 정보"를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 중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보복행위"를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 2.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 대한 지속적 이거나 반복적인 폭력행위일 경우
-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u>음란·폭력 정보</u>	<u>음란·폭력 정보 요</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구 및 제공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u>인터</u>	1의3 <u>정보</u>
<u>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u>	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u>를</u>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	
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	
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5.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u>보</u> 복행위의 금지
- 3. ~ 9.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

2. ~5.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u>.</u>
<u>.</u>
1. (현행과 같음)
2
보복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
위를 포함한다)
3. ~ 9.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 하는-----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 을 가중할 수 있다.

<u><신 설></u>

<u><신</u>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③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 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 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 ⑫ (생 략)

<u>~ </u>	<u> </u>									
<u>1.</u>	피	해형	학생] 0]	나	신.	卫•	고	발	학
	생 c	케	대	한	협	박	또	는	보	복
	행 9	위일] 7	경우	-					
<u>2.</u>	피	해	학식	붱,	신.	卫•	J	.발	학	·생
	<u>또</u>	=	학.	可ら] .	다수	-학	·생 여	케	대
	<u>한</u>	フ	시속	-적(이フ	내		반년	부적	인
	폭									
) –										
		<u>0</u>	경	우	특	별고	고유	- 0]수	에
는	외	부	위	탁;	교육	을	포	함	한디	<u>}.</u>

④ ~ ⑫ (현행과 같음)